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9월 19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9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9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장종연)

가. 제안이유

- 특정 종교 관련 행사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종교 편향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진흥사업대상 규정 중 일부사항 개정

- [별표 1] 중 기타행사의 대상 및 범위의 특정 종교 관련 명칭 삭제 및 용어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에 종교적 중립상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4조에서 별표를 개정하여 기타행사 ‘조찬기도회 등 종무활동’을 ‘종무행사’로 개정하였음.
- 검토결과,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예방함으로써,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, 공직자들의 종교 차별과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9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특정 종교 관련 행사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종교
편향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

2. 주요내용

진흥사업대상 중 기타행사의 대상 및 범위의 특정 종교관련 명칭 삭제 및 용어
용어 정비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9. 7. 18. ~ 8. 7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기타행사의 대상 및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중무행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〔별표 1〕 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			〔별표 1〕 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		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	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체육행사	1. 각종 체육행사: 구(동)민체육대회, 건강 달리기대회, 서울시민 체육대회, 장애인체육대회 등 2. 종목별대회: 각 종목별 구청장배(기), 협회 (연맹)장배(기) 대회, 유·청소년 축구대회 등 3. 체육교실: 구·동 생활체육교실, 기타 체육교실 등 4. 스포츠교류 : 국·내외, 자매결연 지 스포츠 교류 행사	개최 및 지원	체육행사	1. 각종 체육행사: 구(동)민체육대회, 건강 달리기대회, 서울시민 체육대회, 장애인체육대회 등 2. 종목별대회: 각 종목별 구청장배(기), 협회 (연맹)장배(기) 대회, 유·청소년 축구대회 등 3. 체육교실: 구·동 생활체육교실, 기타 체육교실 등 4. 스포츠교류 : 국·내외, 자매결연 지 스포츠 교류 행사	개최 및 지원
체육단체	1. 체육단체: 구 체육회, 구 장애인 체육회, 구 태권도 시범단 등 2. 체육동호인: 체육대회 참가, 학교 및 일반체육 시설 사용 등 3. 체육꿈나무: 운동(경기)부 육성 학교, 생활체육 유소년 단체 등	육성 및 지원	체육단체	1. 체육단체: 구 체육회, 구 장애인 체육회, 구 태권도 시범단 등 2. 체육동호인: 체육대회 참가, 학교 및 일반체육 시설 사용 등 3. 체육꿈나무: 운동(경기)부 육성 학교, 생활체육 유소년 단체 등	육성 및 지원
문화행사	1. 공연 : 문화예술 보호·육성 및 문화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 행사 2. 전시 :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상설 및 기획전시, 작품집 발간, 공모전 3. 전통문화행사 : 무형문화재, 의례 재현, 세시풍속(부군당제, 단오제, 정월대보름 등) 전통문화 계승·발전을 위한 행사 4. 국제문화행사 : 영등포구를 주된 개최지로 하는 국제적 행사(영화제, 음악제, 무용제, 아트마켓	개최 및 지원	문화행사	1. 공연 : 문화예술 보호·육성 및 문화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 행사 2. 전시 :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상설 및 기획전시, 작품집 발간, 공모전 3. 전통문화행사 : 무형문화재, 의례 재현, 세시풍속(부군당제, 단오제, 정월대보름 등) 전통문화 계승·발전을 위한 행사 4. 국제문화행사 : 영등포구를 주된 개최지로 하는 국제적 행사(영화제, 음악제, 무용제, 아트마켓	개최 및 지원
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	등) 5. 문화예술교류 : 지자체 또는 국 제간 문화예술 교류 6. 그 밖의 문화행사 :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문화행사 외 에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	
지 역 축 제	1. 영등포의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정례화하 여 개최하는 구 대표축제 2. 지역 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 위원회가 지역문화 발전과 구 민화합을 위해 정례화하여 개최 하는 축제 3. 영등포의 문화도시 조성구 이 미지 향상을 위해 개최 또는 지 원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문화예술축제	개최 및 지원
예 술 인 및 문 화 단 체	1. 영등포문화원 2.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3.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에 기여하는 관내 문화 예술인 및 동호회	육성 및 지원
기 타 행 사	1. 조찬기도회 등 종무활동	지원

※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, 공연행사, 세
시풍속 행사 등은 경품이 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
내에서만 제공가능
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	등) 5. 문화예술교류 : 지자체 또는 국 제간 문화예술 교류 6. 그 밖의 문화행사 :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문화행사 외 에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	
지 역 축 제	1. 영등포의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정례화하 여 개최하는 구 대표축제 2. 지역 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 위원회가 지역문화 발전과 구 민화합을 위해 정례화하여 개최 하는 축제 3. 영등포의 문화도시 조성구 이 미지 향상을 위해 개최 또는 지 원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문화예술축제	개최 및 지원
예 술 인 및 문 화 단 체	1. 영등포문화원 2.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3.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에 기여하는 관내 문화 예술인 및 동호회	육성 및 지원
기 타 행 사	종무행사	지원

※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, 공연행사, 세
시풍속 행사 등은 경품이 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
내에서만 제공가능